

2023년 7월 1일

Preview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기술 활용에 따른 윤리적·법률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논의인데요.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및 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및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결정 승소 사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의’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인공지능은 가상인격으로 진화 중’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 법적 한계는?’

민후 소식 Minwho News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결정 받아내’

‘김용관,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리걸이슈

인공'지능'은 가상'인격'으로 진화 중

챗GPT로 시작된 인공지능(AI) 열풍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최근 AI 챗봇에 가상인격을 부여하는 '페르소나' 서비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슈퍼챗이나 캐릭터닷에이아이 등 서비스의 경우 소크라테스, 베토벤, 다빈치,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일론 머스크 등 실존인물 뿐만 아니라 백설공주나 셜록 홈즈 등과 같은 가상인물까지 페르소나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페르소나란, 라틴어로서 인격에 해당하는 단어다. 철학적으로 인격은 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내면적이고 정신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슈퍼챗이나 캐릭터닷에이아이 등 서비스가 인격을 구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알다시피 챗GPT는 AI이다. AI란, 인간의 다중 지능 중 일부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하워드 가드너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8가지 다중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자연탐구지능,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자기이해지능, 대인지능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8가지 다중지능을 완성시키는 실존지능이 있는데, 실존지능이란 인간의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실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의미한다.

기존 AI는 인간의 9가지 지능 중 일부인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등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I 챗봇에 가상인격을 부여하려는 '페르소나' 서비스는 AI에 인간의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등을 초월하는 더 다중적인 지능을 구현하는 일련의 시도로 볼 수 있고, AI가 가상의 인격체로서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 초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가상인격이란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행정 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1154 판결은 “개인이 사회적 존재인 이상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전자적 정보처리에 의하여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타인에 의해 수집되어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만큼 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 있게 되고, 개인이 이를 의식하는 이상 개인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정하는 데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인격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된 가상인격에 의해 규정지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판시, 실존인격의 디지털화 결과에 대해서도 가상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실존인격을 전제하지 않은 가상인격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미 언급한 페르소나 서비스에서 알 수 있듯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의 가상인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기존에 알려진 적이 없는 가상인격도 나올 수 있다.

향후 AI로 인간의 대인지능 또는 실존지능이 구현된다면, 인공‘지능’이 가상‘인격’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실존인격의 디지털화된 가상인격과 실존인격이 없는 가상인격이 교류·소통을 하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다.

과거에 법인격에 대해 검토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AI의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주체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가상‘인격’을 전제하고 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권리의 주체는 ‘인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상인격에 대하여 어떤 법적 보호 또는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리걸이슈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 법적 한계는?

최근 비틀즈는 이미 사망한 멤버 존 레년의 목소리를 되살려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AI를 이용해 1980년대에 세상을 떠난 존 레년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이다. 비틀즈는 1966년에 존 레년이 1970년대 말에 녹음했던 미완성곡을 신곡으로 만들어 ‘프리 애즈 어 버드(Free As A Bird)’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적이 있고, 196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여 ‘리얼 러브’(Real Love)’라는 신곡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의 기술로는 존 레년의 목소리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미완성곡에 살아있던 비틀즈 멤버들의 연주를 입히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현재, 이제는 세상에 없는 존 레년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시켜 마치 존 레년이 살아서 신곡을 부른 것처럼 작업이 가능해졌다.

국내에서는 2021년 2월 한 방송에서 고(故) 김광석의 목소리로 편지를 부르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드는 것을 “DEAD(Digital Employment After Death)”라고 하기도 한다.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4
E. yangjy@minwho.kr

시에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켜 특정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목소리까지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법적인 한계는 없을까.

음성의 법적 지위와 퍼블리시티권 이슈

‘음성’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주체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주체가 없으므로 음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의 이슈는 없게 된다.

유명인의 목소리인 경우에는 음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서울서부지법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음성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Midler v. Ford Motor Co. 사건에서 음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Ford 사는 1970년대에 유행하였던 노래를 모아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반대를 하여 그럴 수 없었고, 결국 비슷한 음색을 가진 가수를 찾아 해당 노래를 녹음하고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 법원은 널리 알려진 유명 가수의 특색있는 목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보았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사망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유족에게 상속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실한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고인이 된 유명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든 경우 유족들이 고인 대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저작권법상 이슈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 정의하고 있는바, 표현형식이 아닌 음성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는 없지만, 멜로디와 가사로 표현된 노래는 음악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을 가창의 방법으로 표현한자에 대해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에 대하여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저작권법 제68조). 즉,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로 고인이 된 가수의 목소리를 재현하려면 필연적으로 노래, 즉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일어날 것이다. 위 규정을 적용하면 무제한적으로 고인의 목소리를 이용할 수는 없고, 그러한 재현은 사회통념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성의 이용은 가령, 고인의 목소리로 욕설을 하게 하거나 생존하였더라면 절대 부르지 않을 가사 또는 멜로디로 재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재현을 한 자에 대해 고인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행위의 중지,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8조). 또한 유족이 아닌 제3자도 명예를 훼손하는 재현을 한 자에 대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위반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3호, 제140조).

위와 같이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 재현이 해당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 볼 수 있다면 유족 등이 문제를 삼거나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한 고인 목소리 재현에 대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으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유족 등도 모두 사망한 경우 누구도 침해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고, 형사처벌만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민후 소식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결정 받아내

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들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사고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킹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킹 당한 이더리움 일부를 되찾아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먼저 채무자가 그것을 임의로 반환받아가지 못하도록 이더리움 (가)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의 현금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가상자산에 대하여 압류 이후 실제 현금화 명령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행 법률만을 근거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①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② 관련 자료와 논문 등을 제시해 유효적절한 현금화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③ 마지막으로 그러한 방안은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숙고 끝에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의 인도명령은 현금화 명령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현금화 명령을 전제한 것이며, 인도가 완료 되는대로 곧 현금화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인도명령 및 이어질 현금화 명령은 정착상태에 있던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물꼬를 트는 결정이라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기사

조선비즈 - [해킹당해 빼앗긴 코인, '강제집행' 가능... 국내 첫 사례 나왔다.](#)

민후 소식

김용관 변호사 영입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용관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법무법인 바로법률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거쳐 민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가 되려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전공이 철학이다보니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근접하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고민하다보니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분야가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로스쿨을 다니며 법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법과 관련한 일이 좋아서 변호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관 변호사
T. 02-538-3427
E. kimyk@minwho.com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A. 민후는 아놀드 크롤링사건,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 미러사건 등 뉴스를 통해 이름을 접하고 관심있게 보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IT분야에서 새로운 법리를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법리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저는 기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과 같은 이슈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면 무엇이든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내용이나마 쫓아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제 성향은 업무 일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들을 접하고 만나며,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그 사정을 더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맞아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 좋은 변호사를 넘어 좋은 동료, 좋은 사람이 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후 소식

박수연 변호사 영입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년차 변호사입니다.



박수연 변호사
T. 02-538-3424
E. parksy@minwho.com

Q, 변호사가 되려고 결심하신 이유는?

A.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영문학보다 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법무부 서포터즈, 피해자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법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 저의 적성과 일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A.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민후에서 저의 관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나 자신만의 강점을 소개해주세요.

A. 저는 그동안 M&A 및 벤처투자 법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심사 및 강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문도 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A.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는 민후의 진취적인 비전 하에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동료변호사님들 및 구성원분들과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